

제2부

언론 관련 판결의 쟁점별 분석

제2부

언론 관련 판결의 쟁점별 분석

본 보고서 제2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언론소송 민사 판결 중 확정된 288건을 대상으로, 주요 사건을 선정하여 쟁점별로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판례별로 법원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를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사실관계, 법적 쟁점, 판결요지와 결과, 그리고 해당 판결의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1. 당사자

명예훼손 언론소송 민사 판결에서의 원고는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예를 들어 공직자, 기업인 또는 일반 시민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명예훼손의 원인이 되는 언론보도나 발언을 실제로 작성, 보도, 발행, 유포한 측이며, 언론사(신문사, 방송사 등)와 해당 기사를 작성·기고한 기자 또는 인터뷰 등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이 피고가 된다.

가. 원고

(1) 회사법인의 전(前) 대표의 비리 의혹 보도 관련, 회사법인의 당사자적격을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가합106980 판결)

원고는 글로벌 보험회사의 한국법인이고, 피고는 인터넷 언론사 및 그 소속 기자이다. 피고들은 2022년 10월경 원고 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횡령 의혹과 회사 및 관계기관의 은폐, 수사 지연, 침묵 등과 관련된 다수의 기사를 게재했다. 원고의 항의로 기사는 삭제되었고 정정보도가 게재되었으나, 원고는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추가 업무 부담과 신용·명예훼손,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 대표이사 횡령 의혹 보도에 대해 법인인 원고가 직접 명예훼손의 피해자이자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법인의 명예 역시 훼손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기사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판 및 신용이 저하되고, 재산상 손해와 무형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명령하였으며,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기사에 법인 명칭이 직접 기재되지 않아도 기사의 내용과 문맥, 대표자와의 명확한 연관성 등을 종합할 때 법인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나. 피고

(1) 외부 필자가 작성한 기고문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언론사의 면책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합397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나204792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5876 판결)

원고는 IMF 사태 당시 재정경제부 고위직을 역임한 인물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사와 전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다. 피고인 전 수석비서관은 외부 필자로, 피고 언론사에 8회에 걸쳐 칼럼을 게재하면서, IMF 협상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거짓말로 IMF 환란이 촉발되었다는 등의 표현을 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이유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외부 필자의 기고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언론사가 명예훼손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법원은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의 대상을 '보도 또는 매개'로 규정하며, 그 내용의 작성 주체를 구분하지 않는 점, 외부인의 의견이나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그 설득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점, 그리고 언론사가 편집권을 통해 기고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외부 필자 기고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도 언론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심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고위공직자의 공적 업무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등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아, 정정보도청구는 인정하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외부 필자 기고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도 언론사가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다.

2. 피해자 특정

가. 일반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참조).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나. 피해자 특정이 인정된 사례

(1)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7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2011925 판결)

원고는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으로 재직한 인물이고, 피고는 시사월간지를 발간하는 언론사이다. 피고는 원고가 속한 경호팀의 교체 경위와 대통령 탄핵 이후의 행보, 국정 농단 제보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성명이나 식별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보도하였다. 원고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성명이나 식별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보도 내용과 정황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언론사의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보도에 성명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기사 전체의 내용, 취지, 당사자의 지위와 주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직접적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언론보도에서 성명이나 이니셜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사 내용·표현·경력·사진 등 간접적 정보와 전체 맥락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됨을 확인하였다. 즉, 언론사는 피해자 특정에 대해 더욱 높은 책임과 사실 확인 의무를 부담한다.

(2) 주변 정보를 통해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다면, 실명이 명시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본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가합536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2016346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63639 판결)

원고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활동한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으로 현재 부부이다. 피고는 해당 사건에 관한 기사를 작성·게재한 인터넷 언론사와 그 사내이사 겸 발행인이다. 2018년 5월, 피고 언론사는 유가족 텐트에서 원고들과 다른 유가족 남성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기사로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기사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공익적 목적의 보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있다.

법원은 기사에 원고들의 실명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참사 관련 유가족’ 및 ‘자원봉사자’로 명시하였고 ‘지방에서 올라온 자원봉사자 여성’ 등으로 정보를 한정하거나 ‘제주도에서 살림을 차려 살고 있다’는 등 지역적 정보를 통해 원고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사에서 목격자로 지목된 인물은 현장에 없었고 인터뷰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진상조사 운영위원의 증언 역시 기사 내용과 달랐다. 피고 측의 취재 주장 역시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중대하게 훼손되었으며, 기사에 급박성이나 공익성이 없고 피고들이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 조각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각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기사에 실명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보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도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고, 목격 증언이나 취재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검증이 부족할 경우 언론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이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루더라도, 기사에 급박성이나 공익성이 없고 충분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3) 상호 표기 없이도 기사 내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1가합5906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나2034447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6151 판결)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들은 두 일간지 소속 기자이다. 피고들은

각자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원고 치과의 진료 행태, 환자 피해 주장, 상담 비용 고지 방식, 치료 과정에서의 제품 변경 의혹, 진료비 선납 후 방치 의혹 등을 다룬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에 치과의 상호는 직접 명시되지 않았으나, 병원 위치, 건물 사진, 환자 시위 장면, 건물명 등의 요소로 인해 독자들은 문제의 치과가 원고의 병원임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다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실명 표기 없이도 기사와 주변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보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언론보도가 진실성 및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인지 여부이다.

법원은 피고들이 기사에 원고 치과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기사 제목과 사진에 병원 위치와 환자 피켓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독자가 원고 치과임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사 중 생니를 발치한 사례나 환자 불만, 고가 제품 변경 의혹, 별도 상담비 부과 등 내용이 모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생니 발치 등 일부 기사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었으나, 고가 제품 변경이나 별도 상담비 부과와 관련된 내용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생니 발치 등 허위 기사에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보도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생니 발치에 관한 허위 기사 부분에 대해 피고들은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 외 다른 기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상호 등 실명 공개가 없어도 기사 내 정보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료 고발 보도를 할 때에도 내용, 자료, 기사 배열의 신중함·객관성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명예훼손 분쟁에서는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사실 확인 노력이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

- (1) 소수로 구성된 조직에 대한 집단표시 기사에서 개별 구성원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1717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0나43556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8950 판결)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사 및 그 소속 기자이다. 피고는 2018년 6월 14일 “집행관들 불법 인도집행 만연…채권자 없이도 ‘관행적’ 집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들이 법원의 부동산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나 그 대리인 출석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화돼 있다고 보도하였다. 원고는 해당 기사가 자신을 특정하여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소수로 구성된 조직에 대한 집단표시 기사에서 개별 구성원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법원은 해당 지역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관은 총 11명이고, 그 중 부동산인도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은 4명에 불과하고, 기사 내용과 업무 기간·지역 등 정황을 종합할 때 원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집단표시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했다. 또, 이 사건 기사에서 민사집행법 위반 및 허위 인도조서 작성 사실을 적시한 점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집행관의 위법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고, 기사가 충분한 사실확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악의나 중대한 경솔함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 수가 소수이고 기사 내용 및 정황을 통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또한 언론이 공익적 목적과 상당한 사실확인에 기반해 보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불인정한 사례]

- (1) G시의 상수관로 공사에서 미승인 제품이 사용되었다는 보도가 G시 소속 직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70860 판결)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G시가 발주한 상수관로 공사에 미승인 제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들은 G시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피고가 기사에서 ‘G시 관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승인 제품 사용의 원인을 직원들의 관리 소홀로 돌렸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각각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집단표시 방식의 기사로 인해 원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실제로는 인증 제품만 납품되었고, 피고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기사에 포함한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사에서 특정 시기나 담당자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고, 관련 부서의 직원 수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할 때 개별 원고가 지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사 내용이 개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아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집단표시 방식의 기사라도 구성원 수, 인적 정보 공개 여부, 기사 내용의 구체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예훼손책임의 성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3. 구체적 사실의 적시

가. 일반론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나. 사실적시로 본 사례

(1) 외부기고문에 의견표명 외에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언론사의 책임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합5320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2036947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6966 판결)

원고는 방송사, 피고는 일간지를 발간하는 언론사이다. 피고는 기고문과 기사에서 방송사의 정치인 출연, 정치 이슈 다루기, 간부 해임 및 외부 인사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 방송사가 정치인을 출연시키고 정치 이슈를 다루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간부 해임과 외부 인사 채용 등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언론사가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의 의견 표명뿐만 아니라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기고문을 받아, 외부 인사 작성임을 밝혀 그대로 또는 일부 편집하여 보도하였더라도, 해당 기고문에 허위 사실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면 언론사는 편집권과 게재 결정권을 가지므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의 학생 명의도용에 관한 보도 관련, 기사에 사용된 표현이 사실적시 또는 사실의 암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합366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2021574 판결, 대법원 2023. 5. 20. 선고 2023다215897 판결)

원고인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는 피고 방송사가 학생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이사장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그리고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보도에서 “해당 학생은 고소 사실을 전혀 몰랐다”, “명의도용”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명의도용” 등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위가 입증 가능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도 내용 전체에서 교수의 행위가 암시되거나 특정되어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학생은 고소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명의도용” 등 표현은 증거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고, 기사 전체의 취지에서도 교수가 학생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해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고, 2심과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서도 언론보도에서 비유적, 암시적 또는 추측적 표현이라도 기사 전체의 맥락을 통해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원고가 연예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보도 관련, 암시적·간접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18가합398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2038701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38739 판결)

원고는 피고 방송사 및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자신과 망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및 성접대 의혹을 암시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적 쟁점은 방송보도에서 직접적 표현이 아닌 암시적·간접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방송보도의 각 문구, 통상적 의미, 방송 내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방송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성접대 등 불법적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1심, 2심, 3심 모두 해당 보도를 허위로 인정하고 피고 방송사에 정정보도 의무를 부과했으며, 원고의 명예가 사적 영역의 허위사실로 인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직접적 표현이 없더라도 기사·방송 전체의 취지, 암시적·간접적 표현, 맥락을 통해 시청자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는 공공의 관심사라 할지라도 언론에게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이 요구됨을 재확인한 판례이다.

(4) ‘간첩’, ‘여성성 이용’ 등 표현이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가합5356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나2018728 판결, 대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다256512 판결)

원고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한국 지사의 대표인 중국인이고, 피고는 국내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세 곳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도지사과 친분을 맺고 친중 행보를 유도하며 중국을 위한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대표가 여성성을 이용했다는 내용을 기사와 영상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5억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첩’, ‘여성성 이용’ 등의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비유적·수사학적 표현에 불과한지, 아니면 기사 전체의 맥락과 암시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여져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1심 법원은 ‘간첩’이라는 용어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변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간첩활동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 여성인 원고가 전 도지사과 친분이 있고,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여성성을 이용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으므로, 기사에서 사용된 ‘스파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간첩의 사전적 의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피고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비유적·수사학적 또는 암시적 표현이라도 기사 전체의 취지와 맥락에서 독자가 구체적 사실로 인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실시하였다.

다. 의견표명으로 본 사례

(1) 지도교수의 비리를 폭로하는 보도에서 사용된 “진실 은폐”, “적폐 과학자” 등 표현을 의견표명 내지는 평가로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합458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2061425 판결, 대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다290727 판결)

인터넷 언론사인 피고는 기사에서 모 대학교 연구실 내 폭언, 인격모독, 인건비 상납 등 다양한 비리를 언급하며, 원고(교수)에 대해 “학생·연구원들이 고통받았다”, “진실이 은폐됐다”, “적폐 과학자”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표현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기사 내 표현들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표명 또는 추상적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표현들이 원고의 연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사 전체 또한 과학계 전반을 언급하는 것으로, 원고의 연구실이나 원고의 비리를 직접적으로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수인한도 내라고 보았다. 이 판결은 기사에 사용된 추상적·간접적·의견적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사실 적시 여부 판단은 기사 전체의 맥락과 표현의 객관적 의미, 대상의 사회적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표현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2) 청소년 활동을 빙자한 위장 포교라는 전문가 의견의 인용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간접적 우려를 표명한 의견에 해당한다는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합1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8452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24433 판결)

원고(비영리 민간단체)는 피고(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해당 기사에서는 원고 구성원들이 특정 종교 신도임을 근거로 청소년 대상 봉사활동이 위장 포교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인용되었다. 본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기사 내용이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가 가능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와, 반론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청소년 활동을 빙자한 위장 포교’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의견이나 비평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기사 말미에 이미 원고의 반박 입장이 반영되어 있음을 들어, 원고가 추가적으로 반론보도를 통해 얻을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언론보도에서 전문가 의견이나 제3자 인터뷰 인용을 통한 간접적인 표현이나 우려 표명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이나 비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 노조의 비판 성명을 인용한 보도는 당시 분위기를 평가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2가합5658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4나2010974 판결)

원고는 방송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신문사이다. 2022년 9월,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영상이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자막과 함께 송출되었고, 대통령실은 미국 의회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 언론사는 원고의 노조 비판 성명을 인용해 “엠바고가 언제 풀리냐”며 시끌벅적했다”고 보도했고, 원고는 실제로는 차분히 회의 준비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해당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노조의 비판 성명을 인용한 “시끌벅적했다”, “신이 난 듯 떠드는 소리” 등의 표현이 객관적 사실로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사 전체가 뉴스룸의 태도와 분위기에 대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언론보도에서 의견표명과 객관적 사실의 구별을 엄격히 하고,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한정되어야 하며, 기사 전체의 맥락과 표현 방식, 사회적 배경, 독자의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하였다.

(4) 통화내역에서 비롯된 추정을 전제로 의혹제기를 한 경우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19가합5727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2027667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3나2029537 판결)

인터넷 언론사의 운영자와 소속 기자인 피고들은 과거 청와대 행정관이자 검사로 활동했던 원고의 금융범죄 혐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이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며, 기사에 자신의 실명, 사진, 음성이 포함되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법원이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였고, 3심에서 다시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환송후심에서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2심에서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와 비서관 등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 근무 시 수사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제1사실)과 “원고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제2사실)이 기사에서 암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2심에서는 제1사실과 제2사실을 구분하여, 제1사실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제2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명하였다.

하지만 3심에서는 해당 기사 도입부에서 기사 내용이 피고가 확보한 통화 내역을 근거로 추정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원심이 암시되었다고 본 제2사실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평가 또는 비판적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사에서 제2사실이 암시된다고 하더라도, 제1사실을 적시해 제2사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원심이 단순히 의혹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의혹이나 혐의에 대한 표현이 단순한 주관적 평가나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면, 객관적인 ‘사실적 주장’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언론보도에서 의혹 제기만으로는 곧바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기사 전체의 맥락과 표현 방식, 그리고 실제로 입증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5) 보도 내용이 투서나 소문에 근거한 단순 의혹 제기예 그치는 경우, 허위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가합1031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나2026917 판결)

원고(보험회사)는 피고(인터넷 신문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기사는 원고의 대표가 특정 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사에서 골프 접대 및 향응 제공, 유착 의혹 등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사 내용이 투서와 소문에 기반한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물러,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기사가 공익적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언론보도에서 소문이나 제3자 주장, 추측, 인용이 객관적·구체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사 전체의 맥락과 표현 방식, 일반 독자의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단순 의혹 제기나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4. 사회적 평가 저하

가. 일반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참조).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사회적 평가 저하 인정 사례

(1) 원고가 당한 가해행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도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사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합30767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23. 선고 2022나2549 판결)

원고는 1980년 강원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사북 사건’ 피해자이고, 피고 회사는 2015년 F 회사를 흡수합병한 지역 방송사업자이다. F 회사는 2006년 ‘사북 사건’ 관련 프로그램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방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원고와 F 회사는 사과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해당 방송을 원고의 입장 반영 없이 자사나 타 방송사에서 방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고 그 의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사북 사건’을 다큐드라마로 제작·방송하면서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방송으로 인한 피해와 조정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다큐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을 기본 토대로 하지만 작가의 창작이 개입된 허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한 역사적 사실관계만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성된 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다큐드라마에서 원고의 피해 사실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고, 이 사건 다큐드라마 중 피고가 원고의 피해를 고의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볼만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2심 법원은 일부 방송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인식될 수 있어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반론보도를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게재하고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광부들의 쟁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도 판시하였다. 덧붙여, 피해가 크지 않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민주화운동을 매도한다는 부정적 인상과 오해를 심어주었으므로, 이 사건 다큐드라마의 제작 및 방송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허위보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허구적 형식이 포함된 방송이라도 청취자가 역사적 사실로 인식할 수 있다면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언론은 사실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보여준다.

다. 사회적 평가 저하 불인정 사례

(1) 정부정책 지지 발언 자체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단5174404 판결)

원고는 호흡기내과 교수이며, 피고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2명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간 정책정보지 제작사 소속 기자이다. 소속 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원고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해당 인터뷰 내용은 정책주간지에 기사로 게재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활용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후 2022년 12월 원고가 언론을 통해 “백신 부작용으로 2차 접종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정부의 백신 정책에 무조건 동조하는 인물로 보이게 했으며, 명예훼손과 함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보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단순한 정부 정책 옹호나 백신 접종 장려 발언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여러 언론에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보도가 그의 발언을 새롭게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사와 카드뉴스는 원고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단순히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취지로 소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정부 정책 지지 발언 자체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논란도 보도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며,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상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정책적 옹호 발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나아가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는 전체 맥락, 표현 방식, 독자의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의 법리를 따랐다. 결국, 이 사건은 공적 사안에 관한 발언이나 정부 정책 지지 발언이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단순한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 다른 언론사의 오보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원고의 반박 자료를 무시한 보도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5530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2059422 판결)

원고는 시나리오 작가이고, 피고들은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다. 피고들이 작성한 6건의 기사에는 원고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겨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되었고, 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기사들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기사에서 보도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과 폭행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기자들이 충분한 자료 확인과 취재 등 '상당성'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기사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만큼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에 있다.

법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보도는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보도된 장소는 방역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고 원고 또한 기소되지 않았다. 원고가 신용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 등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한 반면, 기자들은 익명 제보만으로 취재했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다만, 폭행 사실과 상해 정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6주 치료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10주 치료 필요'는 표현은 과장에 불과하며 사회적 평가 저하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기자들이 진실성·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른 언론사의 오보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원고의 반박 자료를 무시하는 취재 태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할 때, 단순한 제보나 기존 기사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자료와 철저한 취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강조한다.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이 진실성과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5.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가. 일반론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법성 판단의 기본 원칙으로 표현행위자가 얻는 이익과 피해자가 받는 피해를 비교·형량한다. 이익형량에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기만 하면 충분하며, 현저한 우월성은 필요하지 않다. 언론 보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과 피해자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며, 보도의 목적, 공익성, 진실성, 신속성, 근거의 신빙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형량 기준은 표현행위의 주체(개인 또는 언론), 피해자의 유형(공인 또는 사인), 표현 내용(사실 적시 또는 의견 표현)에 따라 달라진다. 언론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광범위한 보도가 허용되지만, 엄격한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공익 사안에 관한 의혹 제기나 비판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의 과장도 보호된다.¹²⁾

이하에서는 공적 사안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공적 인물 관련 판례 및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나. 공적 사안에 대한 위법성 판단 심사 기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12) 박용상, 『신명예훼손법』, 박영사, 2025, 154-156면.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와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 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1) 과거 경제부처의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에게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칼럼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합397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나2047923 판결, 대법원 2022. 5. 27. 선고 2022다215876 판결)

원고는 과거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낸 인물이고, 피고들은 인터넷 신문사와 전직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다. 피고 중 전직 수석비서관은 2019년 7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글을 게재하였으며, 이전에도 다른 인터넷신문에 칼럼을 작성·게재한 바 있다. 해당 기사와 칼럼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인터넷 신문사에는 정정보도를, 피고 전직 수석비서관에게는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기사와 칼럼의 ‘허위성’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보도가 공익적 목적 또는 사회적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 결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와 칼럼이 외환위기 원인 규명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객관적 근거나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원고에게 외환위기 책임을 단정적으로 돌린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명예훼손 및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 중 칼럼을 작성한 전직 비서관은 직접적인 관련 업무 경험도 없었고 반론 청구 등 필수적인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근거를 회고록에만 의존하고 핵심 자료를 배제한 점, 복합적 외환위기 원인과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 판결은 공공적 관심사나 사회적 논의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라 하더라도 충분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근거 없이 단정적·일방적 보도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적 감시 기능과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균형에 관한 핵심적 기준을 제시한다.

(2) 전직 대학교 총장의 고등학생 아들이 제1저자로 논문을 등재한 데 대해 연구부정행위 등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12. 선고 2022가합1012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54979 판결)

원고들은 대학교 전 총장, 그 총장의 아내 및 아들이며, 피고는 인터넷 신문사이다. 2014년 총장의 아들이 원고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는 그의 부모와 관련 교수들이었다. 원고 전 대학교 총장이 2021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피고는 그해 9월 원고 아들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관한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게재하였다. 이 기사에는 원고 부자가 논문 등재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손해배상과 기사삭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보도로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할 때 명예훼손이 중대하거나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사 내용 대부분은 진실이거나 의견에 해당하여 허위로 볼 수 없으며, 정정보도가 필요한 부분도 기사의 본질적 핵심과 관련이 없어 원고에게 정정·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기사가 사실을 적시했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으며, 피고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에는 고등학생 자녀의 입시를 위해 대학교수가 자녀를 논문 저자로 허위 등재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교육부에서도 재검증이 이루어졌다. 이 판결에는 원고의 자녀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의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원고의 도덕성과 자질, 유권자의 알 권리와도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임이 판시되었다.

다. 공적 인물

공적 인물은 유명 인물이나 보도 시점에 공공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을 말한다.¹³⁾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경계 설정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은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기준이 등장했으며 이후 판례에서 ‘전면적 공적 인물’, ‘제한적 공적 인물’ 등의 개념과 사적인 인물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되었다.¹⁴⁾ 우리나라는

13) 박용상, 『신명예훼손법』, 박영사, 2025, 173면.

14) *Gertz v. Robert Welch, Inc.*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적 인물(public figure)’ 개념을 명확히 한 판례로 유명하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원고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에 따라 입증책임과 구제 요건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전면적 공적 인물(all-purpose or general-purpose public figure)은 대중적으로 익숙하고, 지속적으로 전국적·지역적으로 명성이 높은 인물로서, 예를 들어 유명 운동선수, 유명 변호사, 정치지도자 등을 들고 있다. 반면에 제한적 공적 인물은 특정 논쟁이나 이슈(예: 고발사건, 사회적 논란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발언한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나 배심원 재량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Alex B. Long, “The Lawyer as Public Figure for First Amendment Purposes” *Boston College Law Review*, 2016, pp. 6-9.

판례를 통해 독자적 기준을 발전시켜 왔으나 ‘공적 인물’의 범위, 진실성 입증 기준 등 핵심 쟁점은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의 진실성, 공익성, 보도자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 개별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적 인물’, ‘공공의 관심사’에 속하는 사안이라면, 명예훼손 위법성 판단 기준을 완화하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는 책임을 인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 유명 연예인, 유명 언론인, 유명 사회 운동가 및 시민단체 대표, 프로 운동선수, 대기업 회장 등 다양한 예를 들고 있으며, 공적 인물로 분류될 경우, 명예 보호가 완화되는 대신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¹⁵⁾

[공적 인물 긍정 사례]

- (1) 원고의 이력을 토대로, 원고를 ‘고위공직자’라고 표현한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51283 판결)

원고는 강원도 도지사 비상근 무보수 보좌관으로 재직하다 사임한 인물이고, 피고는 기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확인 없이 기사에서 원고를 ‘고위공직자’로 표현하고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생 영화제작사 제작비 지원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기사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부정적 인식과 인격권 침해를 입었고, 결국 보좌관직을 사임하게 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과 후속 취재 금지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원고를 ‘고위공직자’로 표현하거나 영화제작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비상근 무보수 보좌관이 고위공직자인지, 그리고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원고를 ‘고위공직자’로 표현하거나 영화제작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정책비서관 경력이 있고, 문화·관광·체육 등 정책 자문과 회의 참석 등 공적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비상근 무보수 보좌관이라도 ‘고위공직자’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해당 기사는 원고의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어 사회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책임이 제한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비상근·무보수 직위라도 공공정책 결정에 관여한다면 고위공직자로 인정될 수 있고, 언론의 사회적 감시·비판 자유가 폭넓게 보장됨을 시사한다.

15) 김진,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고찰 -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 -”, 『형사법의 신동향』 제36호, 2012. 9. 283-304면 ; 김경호, “언론 상대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소송 연구 - 대법원의 위법성조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22권 제2호, 대검찰청, 2023. 8. 32-41면.

(2) 유명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공적 인물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208584 판결)

원고는 유명 유튜브 채널과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이고, 피고는 인터넷 신문사의 기자이다. 피고는 2020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속적으로 원고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는 원고가 협찬받은 다이어트 제품을 자사 제품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홍보했다는 의혹, 과장·허위광고 여부, 제품 공동구매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연한 모욕에 해당한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료를 청구하였다. 주요 법적 쟁점은 원고가 공적인 인물로서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을 받은 경우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SNS는 물론 유튜브 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유명인이라는 점과, 제품 광고 및 판매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의 가능성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기사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활동으로 판단하고,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가 보도의 진실성을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공적 인물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허위과장광고 및 공동구매 과정의 논란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사 내 과장이나 부정적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과 사회적 목적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기사 제목과 본문을 분리하지 않고 기사 전체의 취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인플루언서의 광고 행위와 공동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사회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임을 밝혔다.

(3) 전직 국회의원이 지인의 채용을 위해 부정청탁하였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원고의 공적 지위 및 취재 내용을 고려해 위법성 조각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7903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207237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9180 판결)

전직 4선 국회의원인 원고는 피고들(방송사, 사장, 보도본부장, 사회부장, 기자)이 원고의 지인 채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와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위법성 조각 여부이다.

법원은 이 사건 보도의 부정청탁에 관한 사실 적시에 대해, 당시 그러한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 상황에서 보도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고, 원고는 공적 인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고 방송사가 이 보도를 한 목적 역시 원고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충분한 조사에 바탕을 둔 보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언론이 공적 인물의 의혹을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사실 확인에 기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감시 기능을 존중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라. 공익성 판단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명예훼손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공익성 인정 사례]

(1)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의 명예훼손책임에 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5243762 판결)

원고는 2015년부터 인천 강화군에서 정신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정신과 전문의다. 2024년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 병원의 위반 사실과 권고사항을 담은 보도자료와 결정문을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피고 언론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 병원에 관한 기사를 작성·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환자 통신 제한, 여성개방병동 출입문 폐쇄, 의사능력이 부족한 환자의 자의입원, 열악한 위생 및 시설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 및 병원 신용 손실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피고 언론사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자료에 근거한 보도의 경우 원고에 해명 기회 제공이 필요한지에 있다.

법원은 피고 기사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와 결정문을 인용해 공공의 관심사인 정신요양병원 운영 실태를 다룬 것이라 판시하였다. 또한 인권위 결정문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에 원고에게 해명이나 반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언론 윤리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의 경우, 보도 내용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정신요양병원의 운영 실태와 환자 인권 보호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언론이 인권위 결정문을 인용·보도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시하였다.

(2) 문화행사 입찰 부정 의혹 관련 보도의 공익성을 판단하여 언론사의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2가단227810 판결)

모 행사 대행업체는 2017년 문화재단이 주최한 문화축제의 총괄대행사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해당 업체의 국장으로서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후 경찰이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대행업체와 문화재단을 압수수색하자, 기자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행업체의 사업기획부장이 입찰방해죄로 처벌을 받았고, 원고 역시 정직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기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사기관은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보도에서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보도의 공익성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기자들이 '원고가 입찰부정과 뇌물제공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경찰의 내사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사업기획부장의 형사처벌 등 수사 경위가 기사 내용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다른 언론사들도 유사하게 보도했으며, 노조 관계자 제보와 사내 감사 내용, 현장 수사 동향 등 다양한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점이 인정됐다. 이어 법원은 해당 기자들이 문화축제 입찰 과정의 부정 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지만,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표현 방식 또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방식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기사 제목이나 본문, 구성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강하게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문화행사 입찰 부정 등 사회적·공공의 관심이 높은 사안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넓은 범위의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공공의 이익 실현과 충분한 근거, 사실관계 확인에 기반한 보도의 경우,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해당 판결은 공적 인물 및 공공의 관심사가 결부된 보도에서 언론의 자유와 감시 기능이 폭넓게 보호받는다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3) 조합의 부적절한 인사와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보도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가합337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2006725 판결)

원고는 연예인협동조합의 회장이고, 피고들은 종합뉴스 프로그램 제작사와 소속 기자들이다. 피고들은 2022년 1월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해당 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논란 이후 '회장직 박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과, 원고가 성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협회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정정보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률쟁점은 정정보정 및 반론보도청구의 정당성과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이다.

법원은 첫째, 정정보정 및 반론보도청구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보도는 원고의 성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실 및 원고 스스로의 발언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일부 표현이 원고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보도의 핵심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공익적 단체에서 주요 직책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은 핵심적 내용이 아닌 지엽말단적인 것에 관련되어 원고의 명예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피고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의 인사 문제와 원고의 영향,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를 다룬 공익적 보도로서 언론의 사회적 감시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원고의 신상과 전력은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고, 취재 과정에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보았다. 또 기자는 원고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보도에서는 음성이 변조되어 있어 음성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언급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특정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도의 취지를 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범위였다고도 판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보도와 취재활동은 공익성과 정당성을 갖춘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에 속하며, 원고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판결은 언론이 공적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적 감시·비판 기능은 폭넓게 보호되지만,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범죄 전력자의 공익단체 활동은 사회적 논의 가치가 크므로 이를 문제 삼는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되며, 이미 공개된 사실을 근거로 한 보도는 불법적 정보 취득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법원은 보도의 내용, 공익성, 취재 경위,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4) 최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문제는 현저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8가합5875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2035620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1168 판결)

원고는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피고 주식회사 D는 K 언론을 운영하는 방송사이며, 피고 E, F, G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피고들은 2018년 11월 방송을 통해 원고가 해외에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방영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보도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정정보정, 방송 내용의 삭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해당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보도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있다.

법원은 해당 보도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최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문제를 다루어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공직자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본질적 역할이며,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며, 방송에는 원고 측 반론이 포함되어 균형을 유지하였고, 피고들이 국세청 자료, 현지 취재, 문건 분석 등 객관적 근거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내용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공적 인물, 특히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언론의 본질적 역할임을 확인하며, 공익적 목적과 충분한 사실 확인, 균형 잡힌 보도 방식이 갖추어진 경우 모든 내용이 진실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책임이나 위법성 인정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즉, 공익성과 사실 확인 노력이 있을 때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감시 기능은 보다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성 부정 사례]

(1) 보도 내용이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검증하지 않아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소4404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9487 판결)

원고는 201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원고는 수감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징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언론 기사를 통해 '원고가 교도관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해당 기사로 인해 원고가 특정될 수 있는지,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지 혹은 허위인지, 보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기사에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과 기사 내용, 주변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가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사 내용 중 '금품 갈취 및 협박'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이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보도 내용이 단순한 비위 사건의 일부가 아니라 원고 개인의 신상과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 기자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언론이 사실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공익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허위 보도를 할 경우 명예훼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언론은 보도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익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거쳐야 하며, 무분별한 허위 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마. 진실성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보도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진실성 인정 사례]

(1)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이나 추측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가합203263 판결)

원고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이다. 2022년 2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식품과는 특정 용역에 대해 전자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최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2순위 업체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2023년 1월에도 동일 용역의 전자입찰이 이루어졌으며, 이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여 2순위 업체가 다시 계약 당사자가 되었다. 이후 피고는 인터넷신문을 통해, 2순위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계약을 포기하였으며, 친족관계를 활용한 부정입찰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 기사의 진실성 및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문제가 된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며,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개별 표현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이나 단순화가 있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 담긴 의혹은 반복된 계약 포기, 입찰 순위의 변경, 업체 간 가족관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피고의 의혹 제기가 합리적 추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기사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하는 데 있었으며,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해당 보도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보도의 진실성은 개별 문구가 아니라 기사 전체의 맥락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보도의 핵심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이나 단순화, 추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곧바로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

(2)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충분한 취재와 사실에 기반한 보도라면 일부 과장이나 왜곡이 있어도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1가합5835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2010905 판결)

원고는 마스크 유통업체와 그 대표이사이다. 피고 방송사는 2021년 3월 25일과 26일, 각기 다른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이 외국과 마스크 거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대표이사의 개인 SNS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대표이사는 마스크 공급 의사나 능력 없이 중국 법인들로부터 계약금을 수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3년 8월 10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 보도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영상 삭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 공익 목적과 충분한 취재 노력, 그리고 일부 과장이나 왜곡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실이 진실에 부합할 경우 명예훼손책임의 인정 여부이다.

법원은 주요 보도 내용이 중개무역 목적 등 핵심적 사실과 합치하며, 회사 실체 의심과 대표 관련 내용 또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전체 중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로 판단하며, 일부 과장이나 왜곡이 있어도 전체 취지가 사실과 일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방송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공익 목적의 보도를 한 점을 들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서도 언론이 공익을 위해 충분한 취재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했다면, 일부 과장이나 표현의 왜곡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실성 부정 사례]

(1)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보아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1158/2021가합34773(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9765/2022나2009772(병합)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87246/2022다287253(병합) 판결)

원고들은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최대 주주이거나 가족이 대표이사로 재직된 5개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이다. 피고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들이 국회의원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이며, 국회의원이 국회 활동 중 특정 정책을 주문한 사실과 연계되어 공사 수주가 이루어졌다는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였다. 특히 피고는 원고 중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국회의원의 아들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실제로는 다른 인물이 대표이사였다. 이에 원고들은 보도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주위적 청구), 반론보도(예비적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기사 전체에서 핵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사실의 오기가 본질적 허위에 해당하는지, 공익성 및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 특정 오류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의무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1심 법원은 해당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제로 국회의원의 아들은 아니지만, 회사가 국회의원 및 그 가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국회의원과 배우자가 2014년까지 최대주주였으며 배우자는 2016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할 점, 국회의원 아들이 공법 특허권의 최초 등록권리자이자 공동 보유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언론보도에 일부 과장이나 세부적 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사실과 부합하여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였고, 국회의원이 공적 인물이고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언론이 상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하였다.

반면 2심 법원은 기술사용료 관련 보도는 일부 과장이나 세부적 차이는 있었으나, 회사가 실제로 특허기술 보유업체로서 공사에 참여하고 해당 금액을 받았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나 대표이사가 실제로 국회의원 가족이 아님에도 언론이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은 중요한 사실과 불일치하며, 이해충돌의 근거로 삼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진실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아들을 회사 대표이사로 특정한 보도는 과장이나 세부적 오류의 범위를 넘어 회사와 국회의원 가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사실로 판단되어,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등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대법원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이해충돌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널리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 국회의원과 대표이사 간의 관계 등 핵심 사실관계를 오인한 경우에는 단순한 과장이나 세부적 오류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보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기사 전체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진실성 판단의 기준이며, 핵심 정보에 오류가 있을 때는 언론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의무를 부담한다.

바. 상당성

위법성 조각사유로 상당성 법리를 판단할 때에는 보도의 주요 사실이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그리고 보도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상당성 인정 사례]

(1) 공익성이 있고 충분한 취재가 있었다면,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언론보도라도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합7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203494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30285 판결)

원고는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 방송사는 2016년 4월,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비의 부적절 사용과 교사·아동 명단 허위 등 불법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원고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권리금 과다 수령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주요 법적 쟁점은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경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그리고 보도의 공익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다.

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피고에게 민법 제74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추후보도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고의 허위 보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했다. 법원은 피고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보도한 점을 들어,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했으며, 소멸시효는 무죄 판결 확정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보아 피고의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2심 법원은 어린이집 원생 허위 등록 관련 보도에 대한 추후보도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하고, 횡령 혐의 보도에 대해서는 추후보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방송사가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는 등 충분한 취재를 했으며, 보도 역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고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제도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중점을 두었음을 고려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해당 보도에 일부 허위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공익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는 시효 완성 또는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언론이 개인의 범죄 의혹을 보도할 때, 공익성과 상당한 취재 노력을 갖추면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추후보도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관련 법적 요건과 제소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2) 조사 결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합1113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원고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피고 언론사와 소속 기자, 논설실장은 2018년 6월 21일과 23일 홈페이지에 각각 “국정원이 K 의혹을 받는 H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에 정보를 흘렸으며, 원고가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제1기사와 “이 정보를 언론에 유포한 것은 검찰이며,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가 당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고 시인했다”는 제2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거나 시인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제1기사에서 원고를 단순히 관련자로 언급했을 뿐 K 의혹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2 기사 역시 원고가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을 주체로 명확히 기재하고 피고 측 취재에 기초한 내용이었으므로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언론의 감시·비판 역할과 원고의 공직자 지위를 함께 고려할 때 기사에 허위나 악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제1기사의 내용과 표현이 원고가 국가정보원 정보 유출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을 중시했다. 이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되었고, 제2 기사 역시 원고가 국정원 기획을 시인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객관적 근거나 사실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두 기사 모두 허위성을 인정받아 정정보도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언론 활동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제2 기사에 대해, 원고가 국가정보원 기획에 따라 정보 유출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심의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유지했다. 반면, 제1 기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직자로서 H 사건을 담당했고, 정보 유출 문제가 공적 관심사였으며, 관련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조사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기사 전체가 원고·검찰 개입 의혹과 원고의 반론까지 함께 전한 점을 고려해, 원심이 해당 보도와 관련, 위법성 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제1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고, 소송 절차가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공직자 관련 의혹 보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하였으며, 기사 전체의 맥락, 반론 반영 여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공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넓게 인정되지만,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상당성 부정 사례]

(1) 신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탐사보도를 하면서 교차확인이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당성이 부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177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나2036163 판결, 대법원 2023. 12. 1. 선고 2023다266482 판결)

원고는 국내 담배회사이고, 피고들은 일간지의 편집 책임자 및 소속 기자들이다. 피고들은 2020년 2월경 원고와 그 자회사에 관하여 ① 자회사가 개발 중인 물질은 가치가 없다는 점, ② 합병 대상 회사와 불법적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③ 이에 반대한 일부 이사회 임원이 해임되었다는 점, ④ 원고가 자회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우회상장을 추진하였다는 점, ⑤ 합병비율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기사로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기사에 포함된 사실적 주장 중 허위사실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일부 기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즉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기사 중 일부(자회사의 가치 및 합병비율 관련 내용)는 의견 내지 평가의 영역에 속하므로 객관적 진실성을 다룰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른 부분(이면약정 체결, 이사회 임원 해임, 독성 은폐, 합병비율 재산정 관련)에서는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보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정정보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위법성 조각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탐사보도는 일반 속보 보도와 달리 신속성이 중시되지 않는 만큼 더욱 엄밀하고 신중한 사실 검증이 요구된다고 전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전문가 의견을 교차 확인하거나 인터뷰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취재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법원은 피고들이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판결은 언론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상당성은 기자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노력에 의해 담보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